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한정애·장철민·박희승

민병덕 • 문진석 • 이수진

이학영 • 박지혜 • 강선우

박지원 · 위성락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,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 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도 빈번함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,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

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 2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84호) 및 「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 호 제87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 항) 중 "제7항에"를 "제8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1항) 중 "제7항과 제8항을"을 "제8항과 제9항을"로 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를 통하여 대피권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(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한다)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제38조의2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~ ⑥ (현행 구축·운영 등) ① ~ ⑥ (생 략) 과 같음) ⑦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<신 설>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 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·경보·통지를 통하여 대피권 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(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한다) 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야 한다.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 ⑦ (생략) ⑧ 시·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⑨ -----제8항에-----시・군・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 · 도 재난 예보 ·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 관은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 에게 시 · 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<u>⑨·⑩</u> (생 략)

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각각 시·도종합계획 과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<u>제7항과 제8</u> 항을 준용한다.

① (생략)

<u> ⑩</u> ・ <u> ⑪</u> (현행 제9항 및 제10항
과 같음)
<u> </u>
<u>제8항과 제9항을</u>
③ (현행 제12항과 같음)